

 신안산대학교	재수강에 관한 운영규정	규정번호 2-4-20 제정일자 2011. 3. 10. 개정일자 2024.3.20. 책임부서/팀·계 교무처
---	---------------------	---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에 따라 재수강 신청을 처리하는 제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<2019.11.14.개정>

제2조 (대상) 신안산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학기에 등록하고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. <2019.11.14.개정>

제3조 (시기 및 절차) ① 수강 가능한 학년은 제1학년 2학기부터 신청 가능하다.
 ② 수강신청기간에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.
 ③ 재수강 과목도 수강신청에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4조(재수강 학점 인정) ① 재수강의 경우 기존 취득학점은 취소되고 재수강 취득학점만 인정된다.

② 재수강시 취득가능 최고 성적은 A°로 한다.

제5조 (허용범위) ① D+ 학점 이하를 취득한 과목에 한해서 해당학기에 재수강 신청할 수 있다.
 <2021.06.11.개정>

② 재수강 가능한 교과구분의 제한은 두지 않으나, 대체과목 미지정 후 교과목 폐강시 교양필수, 전공필수 교과목만 학과장이 인정한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.
 ③ 교육과정 개편시 교과목명이 변경된 강좌는 대체과목으로 재수강 할 수 있다. 단, 대체과목 미지정으로 필수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은 학과장이 인정한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.
 ④ 폐강된 필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대체 과목으로 지정할 수 없을시, 타학과에 개설된 유사 과목을 재수강 신청 할 수 있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